



# Employment Standards Branch FACTSHEET

이 안내자료는 일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적 문서가 아닙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기준법과 규정(Employment Standards Act and Regulation)을 참조하십시오.

July 2016

## 불만 해결

고용기준국에서는 고용주와 직원이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 없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합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용기준국에서 문제 해결을 돕거나 필요한 경우 결정을 내립니다.

###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이해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 있는 대부분 직원에게 적용되는 최저 직장 기준을 명시합니다. 일부 전문직은 고용기준법의 전체 또는 일부에서 면제됩니다. 일부 부문과 업계는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특정 고용 기준 조항들을 따라야 합니다.

고용기준법 안내서와 다양한 주제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롯한 고용 기준에 관한 정보는 고용기준국 사무소나 고용기준국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기준법은 불만 접수를 6 개월 내에 하도록 명시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에게 미지급한 돈이 있는지 고용기준국에서 소급해 조사할 수 있는 기간도 6 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 셀프 헬프 패키지(Self-Help Kit) 사용

직원이 임금 지급이나 그 밖의 문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첫 단계는 셀프 헬프 패키지를 사용하여 직접 고용주와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패키지는 직원이 다음을 통해 문제를 밝히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고용기준법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지 결정
- 고용주의 고용기준법 위반 여부를 평가
- 미지급액 산정

- 미지급액이나 고용기준법이 요구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요청  
고용주가 직원의 요청에 동의하면 미지급액을 직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 셀프 헬프 패키지가 필요 없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 직원은 패키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 고용주의 사업체가 폐업한 경우
- 관련된 사람이 만 19 세 미만인 경우
- 불만이 고용기준법의 휴가 조항(임신 휴가나 양육 휴가, 사별 휴가, 간병 휴가, 가족 관련 휴가, 배심원 의무 이행 등)에 관련한 경우
- 직원이 농장 근로자, 의류나 직물 근로자, 또는 가사도우미인 경우
- 직원이 언어나 이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또는
- 직원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에게 이미 편지를 보낸 경우

### 불만 접수

직원이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고용주의 응답이 없거나, 직원이 패키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직원은 고용기준국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용 기준 관련 불만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 우편, 온라인으로 보내거나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불만 접수 시 해당 불만에 관련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



Employment  
Standards Branch

For more information:

Phone: 1 800 663-3316

or 250-612-4100 in Prince George

Website: [www.gov.bc.ca/EmploymentStandards](http://www.gov.bc.ca/EmploymentStandards)

## 분쟁 해결

일부 문제는 조사를 통해 해결되지만 대부분은 교육, 조정 및/또는 심사를 통해 해결됩니다.

## 조사

조사관은 어떤 문제로 조사를 의뢰받으면 양 당사자로부터 정보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조사관은 각 당사자의 입장과 증거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사관은 불만을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고 판결합니다.

## 교육

고용기준국 담당자는 불만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합니다. 고용기준국은 양 당사자에게 연락을 취해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용기준법 조항들을 설명합니다. 이 시점에서 고용주가 불만을 해결하고 미지급액을 지급하면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조정에 부쳐집니다. 양 당사자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료(급여지급 정보, 근무시간 기록, 지급 임금, 징계 처분 문서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 조정

고용기준국 담당관은 고용주와 직원이 만나는 비공식적 자리를 마련하여 조정을 이행합니다. 조정은 직접 만나거나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고용기준 조정 안내자료 참조*)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면, 조정 담당관은 불만 접수자와 고용주가 서명할 “해결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서명된 합의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접수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됩니다.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진 못한다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문제를 분명히 밝히고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며 동의된 사실과 분쟁 중인 사실을 분별하는 데는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공청회

조정으로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기준국은 담당관이 주최하는 심사 공청회를 계획합니다. 공청회 날짜가 잡히면 양측은 필요한 증인을 동반하고 참석해야 합니다. 공청회는 직접 만나거나 화상회의로 진행됩니다. (*심사 공청회 안내자료 참조*)

## 판결

조사 기간이나 조정/심사 절차부터 심사 공청회 종료 시점까지 언제든 문제가 비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심사를 이행하는 담당관은 ‘판결’이라는 서면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에서 불만 접수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다거나 고용주가 달리 고용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고용주에게 미지급액 지급, 고용기준법 위반 중단,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의무적 벌금 납부를 명령합니다.

고용주가 명령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판결’을 대법원에 접수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법원 집행관에게 이 문제를 넘겨 추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이의제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고용기준국 재판소(Employment Standards Tribunal)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기준국 재판소 웹사이트 [www.bcest.bc.ca](http://www.bcest.bc.ca)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